

제 1 호

행정대집행 고 고 서

성명 : 서민성 귀하

주소 : 주소불명

국가철도공단 지티엑스본부 경영지원처-9135호(2026.8.18.)로 국유재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81-13 등 2」에 위치한 귀하 소유의 아래 무단시설물 (중고가전 일체 및 폐기물 일체)을 2026년 8월 28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해당 국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20일까지 반드시 철거·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81-13 등 2	국유재산 내 모든 지장물 및 물건 (중고가전 일체 및 폐기물 일체)	127.4㎡	인력·장비·차량 등을 동원하여 대상 물건 일체를 강제 철거 (국가철도공단 또는 제3자 집행)

2026. 9. 2.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